| 국토교통부 | 보 도 자 료 |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---|---|---|---|
| | 배포일시 | 2021. 10. 22.(금) / 총 4매(본문3, 참고1) | |
| 담당 부서 | 버스정책과 | 담 당 자 | • 과장 장구중, 사무관 이현경, 주무관 임태호<br>• ☎ (044) 201-3826, 3830 |
| 보 도 일 시 | | 2021년 10월 25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4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|

#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지침 배포

## - 지자체 자율 개선 기반 제공… 버스업계 경영효율성 제고 기대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버스 준공영제의 자율적 개선 기반을 제공하고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**「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지침」을 수립하고** 25일 전국 지자체에 **배포**한다고 밝혔다.

○ 이를 통해, 지자체가 그동안 **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개선**하도록 도와, **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**하고 **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준공영제는 관할관청이 **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**를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**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**를 지원하는 제도로, 2004년 서울에서 도입하여 현재 부산, 대구, 인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.

* (준공영제 도입지역)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제주, 경기(일반광역)

○ 준공영제 도입으로 운전자 근무여건 개선, 버스 사고 감소,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**긍정적인 효과**가 발생하였으나,

○ **지자체 재정부담 가중** 및 **버스업계의 경영효율성이 미흡**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
□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**여러 문제점을 분석**하여 **제도의 효율성을 제고**하고, 준공영제를 **도입 또는 개선하려는 지자체에 도움**을 주고자 **지침을 마련**하여 배포할 계획이다.

□ 지침은 **"수입금공동관리형"과 "노선입찰제형"**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수립하였으며, 그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* (수입금공동관리형) 관할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은 보전하는 형태

(노선입찰제형)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

○ (**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**) 연료비,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하여 **통일된 기준을 제시**하고,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항목인 기부금·광고선전비·대출 수수료 등의 항목을 **표준운송원가 산정에서 제외**하여 **과도한 지원 가능성을 차단**하였다.

○ (**보조금 관리 강화**)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의 **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**하고, **부정한 방법**으로 보조·융자를 받은 경우 **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을 규정**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.

○ (**버스업체 경영효율 제고**) 버스 운행성과와 무관한 **기본이윤 비율을 조정**하고, **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**하며, **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**을 높여 버스회사의 **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**토록 할 계획이다.

○ (**지자체 권한 강화**) 관할관청이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**협약서에 관할관청의 노선운영 및 조정 권한을 명시**하고, 지분매각 등으로 **주주 변동**이 발생하는 경우 **관할관청과 사전 협의**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.

□ **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**은 “이번 지침이 준공영제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지자체와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지침 배포와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 중 **우수사례를 공유**하여 확산하고,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**지속적으로 지침을 정비**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현경 사무관 (☎ 044-201-3826) 임태호 주무관(☎ 044-201-3830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| 참고 | 버스 준공영제 지침 주요 내용 |
|---|---|

## □ 목적

○ 국내외 준공영제 시행사례를 토대로 **준공영제의 도입·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**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**안정적 공급과 재정 지원 투명성 확보**

## □ 구성

○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와 노선입찰 준공영제로 구분하여, 운영방식별 도입 및 운영방안 제시

## □ 주요내용

① (**추진계획 수립**)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대상노선 선정, 노선 운행계획 수립, 재원 확보방안 등

② (**표준운송원가 산정**) 표준운송원가 구성 항목 및 산정방안
※ 운송원가 제외항목 별도 제시

③ (**노선입찰 및 한정면허 관리**) 노선입찰 및 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, 한정면허의 발급·갱신·취소 등에 대한 사항
※ 노선입찰 준공영제만 해당

④ (**노선 운행관리**) 노선조정 권한, 노선 운행계획 이행 및 운행관리, 운송사업자의 책무 등

⑤ (**서비스 관리 및 평가**) 최소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표준 수립, 운송사업자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평가 시행

⑥ (**재정지원**)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에 대한 재정지원, 관리관청 및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절감 노력 등

⑦ (**부정수급 관리**) 표준 회계기준 도입, 버스운영관리시스템 운영, 외부회계감사 의무화,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, 경영합리화 방안 등

⑧ (**기타**) 위반사항에 대한 페널티, 준공영제 중지, 준공영제 협약 및 지침 개정 등